

광주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가단5234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오창용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문

변론 종결2022. 12. 20.

판결 선고2023. 3.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35,555,550원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1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9,333,3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49,333,3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1)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1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은 84,888,8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1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 10. 11. 접수 제179344호로 마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5984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31.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19,273,069원 및 그중 7,500만 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7. 9. 15.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의 아버지인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9. 4. 13.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소외인, E, F이 있고, 소외인의 법정상속분은 2/9이다.

다. 피고는 2019. 10.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4.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 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G 앞으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나,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없었다. 2022. 10.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82,000,000원이다.

바. 한편 H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24464호로 이 사건 협의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0나56642) 법원은 2020. 7. 8. '피고는 2020. 8. 31.까지 H 주식회사에 35,555,555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0. 7.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24. H 주식회사에 35,555,5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광주 서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35,555,550원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2) 등 참조). 수익자가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재산이나 가액을 반환함으로써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익자와 해당 채권자가 통모한 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의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바항에 의하면,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광주지방법원 2020나5664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2020. 7. 8.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0. 7. 24. 이미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진 35,555,550원 부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이 사건 협의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미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진 35,555,550원 부분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은 앞서 판단하였는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협의를 취소하고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환원시키는 것은 이미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진 35,555,550원 부분까지 재차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협의는 일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잔액(이하 '공동담보가액'이라 한다)을 초과한다면 수익자가 채권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공동담보가액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수익자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반환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그중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이 이를 산정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고 해당 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지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 원칙 등에 부합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가액 84,888,888원(= 382,000,000원 × 소외인의 상속분 2/9, 원 미만은 버린다)이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평가된 가액 62,222,222원(= 280,000,000원 × 2/9)을 초과하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거쳤고, 이 사건에서 공동담보가액을 84,888,888원으로 인정함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액이 위 84,888,888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고, 이미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진 35,555,550원 부분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49,333,338원(= 84,888,888원 - 35,555,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9,333,3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의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의 원상회복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5,555,550원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김성준

별지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볼 수 없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2) 위 대법원 판결은 2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1건의 판결에 의한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 다른 1건의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진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